김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재고시 의결(안)

의안번호	2002-27

제 출 일 : 2002. 3.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38조(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규정함)

○김제시 시세조례 제84조(시장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고시하여야 한다)

□ 조정이유

○ 재고시 사유 : 우리시는 1989년 지방세법 제238조 신설당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의 역할을 도지사승인으로 가름 하여으나, 지사승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재고시 요구(2001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재고시 처분, 도감사16800-408. 2001.12.24호관련)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고시지역 김제시 현황

(단위:㎢)

구분 / 연도별	도시계획지역 (면적)		용도지역						비고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	
1988	27.89		7.246	0.825	0.118	10.572	2..679	6.450	
1989	김제시	17.60	5.803	0.665	0	9.131	2.001		
	김제군	10.29	1.443	0.16	0.118	1.441	0.678	6.450	
1990	김제시	17.60	5.803	0.665	0	9.131	2.001		
	김제군	10.29	1.443	0.16	0.118	1.441	0.678	6.450	
1991	김제시	17.60	5.803	0.665	0	9.131	2.001		
	김제군	10.29	1.443	0.16	0.118	1.441	0.678	6.450	
1995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1996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1997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1998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1999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2000	27.89		7.724	0.812	0.118	17.034	2.679		
2001	27.89		7.306	0.812	0.118	16.975	2.679		

참고자료

ㄱ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토지 :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안의 모든 토지

ㅇ건축용 : 건 물 -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등 지붕과 벽또는 기둥이 있는 것

부수된시설물 및 시설물 - 전망대,수로,저유조,저장조,등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구축물

ㄱ 읍면동별 도시계획 지역 현황

읍 면 동		행정리	면적	기 타(마을별)
죽산면		죽산리	1.010	대죽, 죽산1,2,3구,가칠
		홍산리		오봉전지역
금구면		금구리	7.20	성길, 장교, 상학, 신기,행교,전지역
		서도리		양명, 상하, 서계,전지역
		월전리		어전일부,
		용복리		어전, 연동일부
		산동리		대율전지역
		대화리		금천, 대야, 장항
금산면		원평리	2.08	학원, 이원, 유목, 증원전지역
		성계리		신암, 성암, 금암, 명산,전지역
		쌍용리		부평, 신평, 학평,용계월평, 회평일부,
		용호리		구미일부,
		구월리		신장일부,
요촌동	요촌동		6.84	요촌동전지역,
	서암동			서암동일부,
	하 동			하동일부,
신풍동	신풍동		3.190	신풍동전지역,
	용 동			용동일부,
검산동	검산동		4.020	검산동,
	순 동			순동일부,
교월동	교 동		3.55	교동전지역,
	옥산동			옥산동전지역,
	갈공동			갈공동일부,
	입석동			입석동일부,

김제시

□ 도시계획세 세수 규모

(단위:천원)

년도별	1999	2000	2001
계	530,906	533,297	568,366
건물분도시계획세	264,029	278,341	311,766
토지분도시계획세	266,877	254,956	256,600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가액 또는 건축물의 가액

※ 과세기준일 : 재 산 세 - 6월1일

종합토지세 - 6월1일

○세율 : 표준세율은 가액의 2/1,000

□ 준용(지방세법 제238조의2)

○종합토지세(토지)와 재산세(건축물)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재산세부과징수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로 규정
- 종합토지세 부과징수규정 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 규정

□ 추진계획

○의회의결 : 2002. 3월중(임시회의시 상정)

○고 시 : 2002. 3월중(시 의회상정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시보게재 : 2002. 4월중(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후 시보게재)